

창업인을 위한 세무회계 가이드 ③

제3편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방법



+ 최재영 동서회계법인 이사(jychoi8048@hanmail.net)

제1편에는 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점들을 설명하였고, 제2편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알아둘 점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제3편에서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과세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세금부담의 측면에서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지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지에 대한 검토는 제1편에서 언급하였으며 본 편에서는 각 사업자 종류별로 세금계산방식과 신고납부방식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법인세

가. 납세의무자

법인세법 제2조 1항에 따라 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아닌 개인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소득이 없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신고의무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비용이 많이 투입되어 결손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매출금액의 7/10,000)를 부과받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법인의 납세의무는 해당법인에게 있으나, 경우에 따라 법인의 재산이 부족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히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부족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과점주주 각자간 법인세 부담액은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라 함은 국세기본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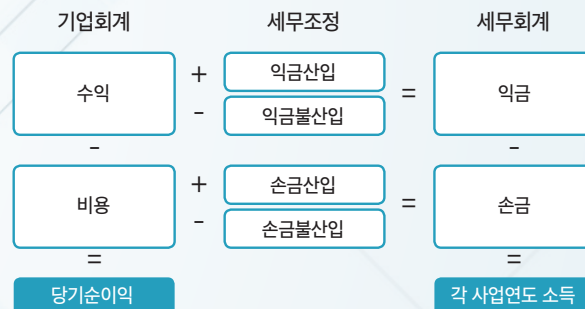
여기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이란 말은 임원의 선임권 행사, 경영권 행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여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단순히 명의신탁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본인이 입증하여야 하므로

함부로 주주명의를 빌려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의 명의 신탁 시에는 증여로 의제 받아 과세가 이루어지니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과세소득

법인세가 과세되는 내국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정하는 1회계기간을 사업연도로 하여 계산되며 국내 및 국외소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회계기간은 최초 법인설립 시 정관에 그 정함을 반드시 두어야 하며 이후 정관의 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의 방식)에 따라 사업연도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의 정함에 따라 회사마다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대한민국의 대부분 일반법인은 사업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일부 금융업은 4월 1일부터 3월 31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렇게 정한 해당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하며 이는 회계상 소득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상 소득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산출되는 소득이며 세무상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소득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상호 일치하지 않으므로 어떤 수익이나 비용은 회계상 인정되나 세무상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무상으로는 이익이나 비용을 인정하나 기업회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세무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기업회계상 이익에서 세무신고용 세무상 이익으로 전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납세지

법인은 본점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소재지입니다. 서울에 본점소재지가 있고 지방에 공장(지점)이 있는 경우 법인세의 납세지는 서울의 본점이 소재하는 지역이므로 동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점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세지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각각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신고납부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통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정한 기업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3월 31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그 다음날을 신고납부기한으로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종전 법인세할주민세)이 법인세와 별도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동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당해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

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2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본점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사업장 별로 종업원수와 사업장면적을 고려하여 안분한 세액을 각각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별지 제 3호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예시하면 우측과 같습니다.

제1호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illegible]

제3호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첨] 해운로 석리 (2003.02.29 개판)			
사립 연호	법인세·자세분류 및 세목명·합계상징치	면 적	연 당 세
사립사무소지		사립사무소지	
1	1	1	1
2	2	2	2
3	3	3	3
4	4	4	4
5	5	5	5
6	6	6	6
7	7	7	7
8	8	8	8
9	9	9	9
10	10	10	10
11	11	11	11
12	12	12	12
13	13	13	13
14	14	14	14
15	15	15	15
16	16	16	16
17	17	17	17
18	18	18	18
19	19	19	19
20	20	20	20
21	21	21	21
22	22	22	22
23	23	23	23
24	24	24	24
25	25	25	25
26	26	26	26
27	27	27	27
28	28	28	28
29	29	29	29
30	30	30	30
31	31	31	31
32	32	32	32
33	33	33	33
34	34	34	34
35	35	35	35
36	36	36	36
37	37	37	37
38	38	38	38
39	39	39	39
40	40	40	40
41	41	41	41
42	42	42	42
43	43	43	43
44	44	44	44
45	45	45	45
46	46	46	46
47	47	47	47
48	48	48	48
49	49	49	49
50	50	50	50
51	51	51	51
52	52	52	52
53	53	53	53
54	54	54	54
55	55	55	55
56	56	56	56
57	57	57	57
58	58	58	58
59	59	59	59
60	60	60	60
61	61	61	61
62	62	62	62
63	63	63	63
64	64	64	64
65	65	65	65
66	66	66	66
67	67	67	67
68	68	68	68
69	69	69	69
70	70	70	70
71	71	71	71
72	72	72	72
73	73	73	73
74	74	74	74
75	75	75	75
76	76	76	76
77	77	77	77
78	78	78	78
79	79	79	79
80	80	80	80
81	81	81	81
82	82	82	82
83	83	83	83
84	84	84	84
85	85	85	85
86	86	86	86
87	87	87	87
88	88	88	88
89	89	89	89
90	90	90	90
91	91	91	91
92	92	92	92
93	93	93	93
94	94	94	94
95	95	95	95
96	96	96	96
97	97	97	97
98	98	98	98
99	99	99	99
100	100	100	100

현행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확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법인 스스로 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업연도 단위로 법인세를 전액 납부하도록 한다면 납세의무자는 일시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기에 부담이 되고 정부 입장에서 세출은 연간 일정하게 지출되는 데 반하여 조세수입은 특정시기에 일시적으로 유입되므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예납제도가 있습니다. 중간예납이란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일반적으로는 1년이 사업연도) 법인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한 후 확정신고시(통상 다음 연도 3월말)에 이를 공제하여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12월 말 법인의 경우 8월 말)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는 매일 미납부세의 3/10,000에 해당하는 미납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중간예납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의 50% 상당액을 납부하는 방식과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제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내국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총납부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할 수 있고 총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마. 서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 원 초과	39억 8천만 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바. 가산세

법인세와 관련된 가산세는 15종에 이르며 이 중 법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표적 가산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무신고가산세**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매출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받게 됩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즉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최소한 수입금액의 7/10,0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② **과소신고가산세** : 법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받게 됩니다.
-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과소납부 세액에 미납기간 동안의 일수에 일일 3/10,000에 해당하는 가산세(이자상당액)를 부과받게 됩니다.
- ④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증자, 감자, 주식양수도, 주식증여 등)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 액면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납세자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세무대리인에게 변동내용을 통지하지 않으면 누락하게 되며, 누락 시 통상 부과되는 세금도 큰 금액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유념하여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가. 납세의무자

소득세법 제2조에 의하여 거주자는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는 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과세소득

종합소득세 계산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이며 이 중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이자 및 배당소득,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연금소득 및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선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 중 소득세법상 당해 연도 사업소득의 계산구조는 전술한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의 산출구조와 대동소이합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이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과 대응되며 법인세법상 손금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와 대응됩니다.

다. 납세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주소지는 서울이고 사업장은 부산이거나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사업자 본인의 주소지가 됩니다.

라. 신고납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월 31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그 다음날을 신고납부기한으로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동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한과 동시에 당해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거주지)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는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안분계산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별지 40호 서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예시하면 다음 장의 그림과 같습니다.

108 BROADCASTING & TECHNOLOGY

② **과소신고가산세** :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받게 됩니다.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과소납부 세액에 미납기간 동안의 일수에 일일 3/10,000에 해당하는 가산세(이자상당액)를 부과받게 됩니다.

④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등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소득수취자의 인적사항과 지급일, 지급금액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소득(잡급)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에는 매분기 말의 다음달 말일(예를 들어 1사분기의 경우 4월 말일)까지 신고하되 4분기에 지급한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급조서제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누락 및 기한 후 제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⑤ **사업용 계좌 미신고 · 미사용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사용(매출 및 매입대금, 임차료 및 인건비 등의 수금 및 지출)한 경우에는 동 미신고 기간 중 수입금액의 2/1,000 또는 신고는 하였으나 미사용한 금액의 2/1,000를 가산세로 부과받게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①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 원**
-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 원**
- ③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00만 원**

사. 성실신고대상자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할 때에 비치 ·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일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면 관할세무서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아주 자세한 증빙내역을 검토하고 소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본인의 매출 추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으로 전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 ①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20억 원**
-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0억 원**
- ③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5억 원** 